

인간, 초효율, 윤리, 감동경영

한국장학재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6. 2.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주요 내용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법령에 우선 적용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위임한 명령’ 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만 해당됨(대법원 2003두 8395)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관련 업무	공통
비공개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 세부 내용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5.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
	6.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7.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등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 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란 외교관계 등에서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고려(대법원 2004두 12629)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관련 업무	을지연습, 비상 계획,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비밀 기록물 관리, 귀빈 참석 행사, 국가 간 대외협력 등
비공개 세부 내용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세부 내용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6. 부서별 비상계획 등 공개될 경우 기관의 안전과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약·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8.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업무	청사 등 시설 보안 관리, 신변보호, 인감관리, 재산관리 등
비공개 세부 내용	1. 업무상 지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감업무, 중요열쇠 관리,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정보
	5. 위험물의 저장위치에 관한 정보
	6.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7.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0두24913)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업무	소송, 재판, 수사 등 관련 업무
비공개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관련 업무	공통(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감사, 감독·지도·점검, 시험, 규제, 입찰계약, 연구·기술개발, 인사관리,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세부 내용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임직원의 채용시험 등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임직원 채용·충원·교육훈련·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보상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제도 및 규정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세부 내용	8.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정책기획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3.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한 기획,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14.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관련 업무	공통(고객, 임직원, 위원회·심의회 위원, 사업·업무 참여자, 거래상대방 등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 관련)
비공개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 세부 내용	5.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감사·조사 등 관련 정보
	7. 경비지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내역 등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8.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관련 업무	공통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세부 내용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기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관련 업무	청사 관리, 기숙사 관리 등
비공개 세부 내용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2.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